

정 관

재단법인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국내외의 적당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이 법인은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술활동을 통해서 인류에 공헌하는 저술 및 예술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그들의 독창적인 활동을 지원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목적사업)

(1)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문학 창작활동 및 국내외 문학의 상호교류등 문학활동의 지원
2. 미술 창작활동 및 국내외 미술의 상호교류등 미술활동의 지원
3. 음악 창작활동 및 국내외 음악의 상호교류등 음악활동의 지원
4. 무용 창작활동 및 국내외 무용의 상호교류등 무용활동의 지원
5. 학술활동의 지원
6. 장학금 지급
7.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2) 이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적절한 수익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공여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나 이 법인과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6 조 (공고사항 및 방법)

-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이 법인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유수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 (2) 본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aradise-cf.or.kr)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2 장 임 원

제 7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개정 2014.11.18.>
 2. 감사 2인
- (2) 제4조에 정한 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3) 상임이사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 조 (임원의 임기)

-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임원의 선임방법)

- (1)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2) 감사는 이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항 단서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3)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이사장)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4)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장이 궐위(闕位)되었을 때에는 이사회 호선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정하며,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1 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12 조 (감사)

(1) 감사는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회 운영 및 업무처리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감사는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한다. 다만 의결권은 없다.

제 3 장 이 사 회

제 13 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14 조 (이사회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2)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3)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사항,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2)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이사회회의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었거나 이사회회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전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 16 조 (이사회회의 기능)

이사회는 이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 차입금 및 재산의 관리, 처분, 취득, 기채(起債)에 관한 사항
6.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7.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이사장이 재단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제 17 조 (의결정족수 등)

- (1)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이사회는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附議)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18 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19 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4 장 재 정 (재산과 회계)

제 20 조 (재산의 구분)

-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절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무상취득 등에 의하여 적립기금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회계잉여금 중 적립금
- (3) 이 법인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과 같다.

제 21 조 (재산의 관리)

- (1)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본재산의 목적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2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23 조 (경비의 충당)

이 법인의 유지, 운영 및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果實)과 사업수익, 기부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24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이 법인의 설립자 및 임원과 민법 제 777 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 (2)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이 법인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25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26 조 (예산 및 결산 등)

- (1)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2)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 (3) 이 법인의 매 회계년도 세계(歲計)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익년도에 이월사용하거나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손실금은 익년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 27 조 (회계의 구분 및 원칙)

-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2) 제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計理)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 (3) 제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법상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4)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28 조 (장기차입금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및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9 조 (임원 등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비상임 임원과 고문(자문위원)을 포함한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각 종 위 원 회

제 30 조 (각종 위원회의 설치)

- (1) 이 법인의 원만한 운영과 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본장에 의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1 조 (자문위원회)

- (1) 자문위원회는 약간명의 고문으로 구성되며, 고문은 이 법인의 설립 및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고, 이 법인의 설립취지 및 목적사업에 찬동하는 사회 각 분야의 원로급 인사 중에서,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 (2) 자문위원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며, 고문은 이사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법인의 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2 조 (사업위원회)

- (1) 사업위원회는 이사회에서 부의(附議)하는 각종 사업 및 이 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제반 문화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를 행하고, 이사회 사업운영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제공한다.
- (2) 사업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하며, 필요에 따라 교체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사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기획분과위원회, 운영분과위원회, 출판섭외분과위원회, 문학상심의분과위원회, 장학생 선발분과위원회 및 미술관설립추진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33 조 (동서문화위원회)

- (1) 동서문화위원회는 국내문학작품 및 외국문학작품 중에서 번역 및 출판 대상 작품을 선정하고, 번역된 작품들이 출판될 수 있도록 해당국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이를 주선한다.
- (2) 전조 제 2항의 규정은 본위원회에 준용한다.
- (3) 동서문화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한국문학 번역대상 선정분과위원회 및 외국문학번역대상 선정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6 장 사 무 국

제 34 조 (구성)

- (1) 이 법인의 일반사무 및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서는 국장 1인(상임이사가 겸임할 수 있음) 및 이를 보좌하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제 35 조 (업무)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등 기타 필요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6 조 (해산)

이 법인이 제 3조의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37 조 (잔여재산의 처리)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38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40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41 조 (사업계획서)

익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해당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제출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상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전락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801-2	4년
이 사	송지영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 미주아파트 7-1402	4년
이 사	정한숙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삼익아파트 1-103	4년
이 사	이경성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광장아파트 3-1108	4년
이 사	전숙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0-205	4년
이 사	김주영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5-803	4년
이 사	강석희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19-1302	4년
감 사	이준영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양아파트 4-505	2년
감 사	이경석	서울 서초구 반포동 2-1 신반포아파트 8-103	2년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재산의 종류	수 량	평가액 (단위:원)	비 고
동 산 (예금)		300,000,000	
합 계		300,000,000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2003년 11월 20일 현재)

재산의 종류	수 량	평가액 (단위:원)	비 고
동 산 (예금)		2,452,264,681	
동 산 (주식)	4,000	6,290,296,000	(주)파라다이스부산
합 계		8,742,560,681	